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학지문 읽으며 멘붕<sup>멘탈 붕괴</sup>했던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오답률 2위(72%), 7위(59%), 9위(53%) 문항이 모두 이 법학 세트에서 나왔으니까요.

개념 간 관계를 묻는다는 점에서 법학 문항도 기존 수능문항과 다를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관계중심의 정보처리훈련을 충분히 한 학생일지라도, 이 세트<sup>예제5~9로 다뤄</sup>는 좀 어려웠을 겁니다. 양수, 양도, 직접점유, 간접점유, 점유개정, 반환청구권, 선의취득 같은 용어도 낯설고, 그 용어가 가리키는 개념도 평소 훈련해본 유형과 달랐을 테니까요.

수능참고서를 10년 넘게 써온 제 입장에서도 이 세트는 느낌이 좀 달랐습니다. PSAT상황판단, LEET추리논증에 나오는 법학문항과 스타일이 꽤 비슷했습니다. 아예 출제구조가 똑같은 기출문제<sup>예제1~4로 다뤄</sup>가 있을 정도니까요. (저는 수능국어 기본서 외에 PSAT/LEET 기본서도 써왔기 때문에 이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험생이나 수능강사들이 관련 문항을 연결시켜 대비해주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강사분들 중 LEET 언어이해 기출문제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좀 있어도 LEET 추리논증이나 PSAT 상황판단까지 연구하시는 분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저 아니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사명감도 있었고요.

만약 책에서 다룬 내용이 시험에 적용된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제게도) 로또 당첨급 행운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 책을 통해 배운 기초 법률용어 및 정보처리훈련한 경험이 시험장에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책을 통해 법학지문에 대한 자신감을 얻길 바랍니다.

---

**덧:** 전자책을 종이책으로 정식 출간하면서, 대법원 주요판례 중 출제가능한 이슈 10선을 부록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념의 구분/포함과 관련하여 상급심에서 판결이 바뀐 경우를 주로 다뤘기 때문에, 논리적 사고훈련에 도움이 될 겁니다.

# 목차

머리말\_ 3쪽

목차\_ 4쪽

1. 오리엔테이션 9제\_ 5~19쪽
2. 극한지문 법학 61제\_ 20~80쪽
3. 법적 이슈 10선\_ 81~88쪽

꼬리말\_ 89쪽

## 책속책

극한지문 법학 61제 해설\_ 1~59쪽

## 활용법

1. 실전처럼 문제를 풀어보세요. 가급적 한 문항당 3분을 넘기지 마세요.
2. 해설의 기초 법률용어를 암기할 필요는 없으나, 시험장에 나왔을 때 반갑고 기쁠 정도로는 복습해주세요.

## 일러두기

0. 오타자는 artofkorean@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고맙습니다.
1. 원문의 甲, 乙, 丙 등은 수능 서술방식을 고려하여 A, B, C 등으로 바꿨습니다.
2. 원문의 '제00조'는 제시순서대로 1, 2, 3으로 번호를 붙였습니다.
3. 질문은 언어논리.kr 블로그 - [극한지문] 카테고리에 공개댓글로 부탁드립니다.
4. 문항에 제시된 구체적인 법령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원래 기출문제를 존중하여 현행법령에 따라 문제를 수정하지는 않았습니다.
5. 이 책 갖고 다녀도, 아무도 수험생인 것을 눈치챌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원서 느낌 나게 표지디자인을 했습니다. 책 제목은 '**극한지문-법학**'이니 주변에 추천할 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

# 1. 오리엔테이션 9제

## 1.1. 법학지문 해석시 주의할 점

- ① 법조문은 원칙을 제시한 후 예외를 덧붙이(고 또 예외의 예외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칙이 단정적으로 표현되었다 느껴지더라도, 뒤에 예외가 소개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출제자는 예외를 곧잘 문제화합니다.
- ② 종종 법조문을 반대해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즉, “A인 경우에는 B한다”(A→B)를 때에 따라 “A가 아닌 경우에는 B하지 않는다”(~A → ~B)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자가 혼인을 할 때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라는 규정은, 성년자의 혼인에 대해서는 부모의 동의 여부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부모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2012학년도 LEET 추리논증 7번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소유자로 하여금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토지로서 그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를 **반대해석**하면 소유권 변동의 등기가 이행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것이고 법제처 2005.10.21. 회신 05-0058 해석례

이러한 반대해석은 기호 논리학에서 오류로 분류될 수도 있으나, 법학에서는 해석 방법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래 기출지문 2014학년도 수능 국어영역 예비평가을 기억해두세요.

법률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법적 문제에 대한 해결 기준을 정하려고 한다. 하지만 다양한 사례를 모두 법률에 망라할 수는 없기에, 법조문은 그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조항들이 실제 사안에 적용되려면 해석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법조문도 언어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원칙적으로 문구가 지닌 보편적인 의미에 맞춰 해석된다. 일상의 사례로 생각해 보자. “실내에 구두를 신고 들어가지 마시오.”라는 팻말이 있는 집에서는 손님들이 당연히 글자 그대로 구두를 신고 실내에 들어가지 않는다. 그런데 팻말에 명시되지 않은 ‘실외’에서 구두를 신고 돌아다니는 것은 어떨까? 이에 대해서는 금지의 문구로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지의 효력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이처럼 문구에서 명시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방식을 **반대 해석**이라 한다.

그런데 팻말에는 운동화나 슬리퍼에 대하여도 쓰여 있지 않다. 하지만 누군가 운동화를 신고 마루로 올라가려 하면, 집주인은 팻말을 가리키며 말할 것이다. 이 경우에 ‘구두’라는 낱말은 본래 가진 뜻을 넘어 일반적인 신발이라는 의미로 확대된다. 이런 식으로 어떤 표현을 본래의 의미보다 넓혀 이해하는 것을 **확장 해석**이라 한다.

하지만 팻말을 비웃으며 진흙이 잔뜩 묻은 맨발로 들어가는 사람을 말리려면, ‘구두’라는 낱말을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는 어렵다. 위의 팻말이 주로 실내를 깨끗이 유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라면, 마루를 더럽히며 올라가는 행위도 마찬가지로 금지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유추 해석**이다. 규정된 행위와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일에는 규정이 없어도 같은 효력이 주어져야 한다는 논리이다.

그런데 구두를 신고 마당을 걷는 것은 괜찮다고 반대 해석하면서도, 흙 묻은 맨발로 방에 들어가도 된다는 반대 해석은 왜 받아들이기 어려운가?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나 팻말을 걸게 된 동기 등을 고려하며 판단하기 때문일 것이다. 법률의 해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법률의 목적, 기능, 입법 배경 등을 고려한다. 한 예로 형벌권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죄형법정주의라는 헌법상의 요청 때문에, 형법의 조문들에서는 유추 해석이 엄격히 배제된다.

- ③ 정의, 행위주체, (법조문을 적용할) 조건/상황, 효력, 예외 등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출제자가 바꿔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1.2. PSAT/LEET 기출문항이 수능에 도움이 될 수 있는가?

- ① PSAT은 현재 행정고시/외교관후보자/입법고시 1차시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21년부터 7급 공무원 1차시험으로 확대적용됩니다.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세 과목으로 구성되는데,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이 아니라 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수능과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이중 상황판단은 구체적 상황을 주고 조건에 따라 정답을 찾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법조문 적용 문항도 곧잘 등장하는데, 이 유형이 수능/모의평가 법학지문을 푸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수능에도 법학지문을 통해 지문이나 <보기>의 구체적 상황에 대해 판단하는 고난도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입니다.
- ② LEET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 활용되는 시험으로서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로 구성됩니다. 언어이해는 고난도 수능 독서와 비슷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교재나 강의가 여럿 있었습니다. 반면 추리논증은 수능 범위를 넘어서는 논리학 지식(기호논리학, 귀납논리학)이 필요했기 때문에, 수능 대비용으로 주목한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시험에 출제되는 법조문 적용 유형은 PSAT상황판단, 수능법학지문과 정보처리과정이 유사합니다. 따라서 LEET 추리논증 기출문항도 법학지문 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③ 위의 ①, ②를 독자분들이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과거 PSAT/LEET 기출문항 4문항을 살펴보고,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학 지문을 풀어보겠습니다. 30분 정도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나면, 모의평가 법학지문이 PSAT/LEET 기출문제와 몹시 유사함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예제 1** 다음 글을 읽고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동산에 관한 소유권의 이전(양도)은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첫째, 양수인이 이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표시의 합치만 있으면 그 효력이 생긴다. 둘째, 당사자 사이의 계약으로 양도인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기로 한 때에는 양수인이 인도받은 것으로 본다. 셋째,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3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 인도(引渡):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사실상 지배의 이전

— | 보기 | —

ㄱ. B가 A소유의 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A가 B에게 그 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여야 한다.

ㄴ. B가 A소유의 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A와 B 사이에 그 동산에 대한 매매를 합의하더라도 A가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B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ㄷ. A가 자신의 동산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B와의 계약으로 자신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B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ㄹ. A가 B에게 맡겨 둔 자신의 동산을 C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A가 B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C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할 수 있다.

- ① ㄹ
- ② ㄱ, ㄴ
- ③ ㄱ, ㄹ
- ④ ㄴ, ㄷ
- ⑤ ㄱ, ㄷ, ㄹ

## 예제 1 해설

**기초 법률용어** 처음이라 좀 많은데, 문제를 풀어나갈수록 정리해야 할 용어가 확 줄어들 거예요!

**부동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재산 = 토지 및 그 위에 고정된 건물

**동산:** 말 그대로 움직일 수 있는 재산 = 부동산 이외의 물건

**양도** 권별도: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줌

**양수** 받을 수: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음

**합치:** 의견의 일치

↳ **합의:** 의견의 합치 ≠ 협의: 단순히 의견의 수렴/참작해야 함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소유:**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인도:** 물건에 대한 점유의 이전, 즉 **사실상 지배의 이전**

**반환청구권:** 반환되려면 좋게 달라고 청구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지문 구조화

양도효력이 생기는 때

원칙: 양도인 — 동산 → 양수인

예외: 1. 양도인 → 합치 ← **양수인 + 동산**

2. **동산 + 양도인** → 계약 ← 양수인

3. 양도인 — 반환청구권 → 양수인

↓  
**제3자 + 동산**

## 선지 판단(정답 ③)

ㄱ. B가 A소유의 동산을 증여받아 소유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A가 B에게 그 동산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이전** 인도하여야 한다.

: 원칙적으로 동산을 인도 사실상 지배의 이전해야 소유권 이전의 효력이 생깁니다. 원칙 및 각주 문제화

ㄴ. B가 A소유의 동산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경우, A와 B 사이에 그 동산에 대한 매매를 **합의** 하더라도 A가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B는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제시된 상황에서 양자가 합의(합치)한다면,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미 B가 점유하고 있으니 따로 인도할 것도 없죠.) 예외1 문제화

ㄷ. A가 자신의 동산을 B에게 양도하기로 하면서 B와의 **계약**으로 자신이 그 동산을 **계속 점유**하고 있으면, B는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 계약을 했다면 A가 계속 점유하더라도 B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예외2 문제화

ㄹ. A가 B에게 맡겨 둔 자신의 동산을 C에게 현실적으로 인도하지 않더라도 A가 B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C에게 양도함으로써 소유권을 C에게 **이전**할 수 있다.

: B가 동산을 점유하더라도, A가 C에게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면, 동산을 인도의 것으로 보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예외3 문제화

**예제 2** 다음 규정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제1조** 평온<sup>1)</sup>·공연<sup>2)</sup>하게 동산을 양수<sup>3)</sup>한 자가 선의<sup>4)</sup>이며 과실 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2조** 전조(前條)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盜品)이나 유실물(遺失物)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 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도품이나 유실물이 금전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같은 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으로부터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유실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 1) 평온(平穩): 정상시의 상태  
 2) 공연(公然):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3) 양수(讓受):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음 ↔ 양도(讓渡)  
 4) 선의(善意): 당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 | 보기 | —

ㄱ. A가 밤늦게 길을 가다가 MP3기기를 주웠는데 MP3기기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습득자인 A가 공고 없이 MP3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ㄴ. A가 한 달 전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B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중고 자전거판매점에서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경우,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ㄷ. A가 3년 전에 도난당한 시계를 B가 정육점 주인 C로부터 선의취득한 경우,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ㄹ. A가 B소유의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C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A는 카메라의 소유자가 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 예제 2 해설

### 기초 법률용어

평온: 정상시의 상태

공연: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

선의: 당해해당되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

↔ 악의: 당해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 \*법률에서 선의/악의는 도덕적 선악과 무관

과실: 부주의 (출제예상 테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의 전제가 되는 **과실**의 유무와 그 과실의 경중에 관한 표준은 그 개인에게 관한 구체적인 사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보통인으로서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며, 위의 일반적 보통인이라 함은 추상적인 일반인을 말함이 아니고 그와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직업과 직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보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주의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 그 과실유무를 논하고 위와 같은 **주의를 심히 결여한 때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67. 7. 18., 선고, 66다1938, 판결]

전조: 앞 조, 동조: 같은 조

도품: 도둑질/강도질한 물건

유실물: 점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으로, 도품이 아닌 것

### 지문 구조화

1조: (평온&공연&동산 양수&선의&~과실&동산 점유) → 소유권 취득  
└ ‘~’은 부정을 의미하는 기호

2조: 도품or유실물 & 2년 내 → 반환 청구

3조: 도품or유실물을 경매or선의매수 → 변상&반환 청구

4조: 유실물 공고 1년 후 → 습득자 소유권

### 선지 판단(정답 ④)

ㄱ. A가 밤늦게 길을 가다가 MP3기기를 주웠는데 MP3기기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습득자인 A가 **공고** 없이 MP3기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4조를 **반대해석**하면, 공고 없이는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ㄴ. A가 한 달 전에 **잃어버린** 자전거를 B가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중고 자전거판매점에서 **구입**하여 **타고 다니는** 것을 알았을 경우,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3조의 앞부분을 만족하므로, 변상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ㄷ. A가 **3년 전**에 도난당한 시계를 B가 정육점 주인 C로부터 선의취득한 경우, A는 B가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시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2조를 반대해석하면, 2년이 지났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ㄹ. A가 B소유의 카메라를 빌려 사용하고 있는 C로부터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카메라를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A는 카메라의 **소유자**가 된다.

: 1조의 앞부분을 만족하므로 A는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예제 3** 다음에서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권리를 가진 자만이 타인에게 권리를 이전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물건의 일종인 동산에 대하여는 거래 시에 물건이 매도인의 것이라고 믿은 매수인이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넘겨받는 경우라면 무권리자(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도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예컨대, 갑이 병의 자전거를, 갑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을에게 돈을 받고 넘겨주면, 그 자전거가 갑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는 을의 것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겠지만,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 을은 그 자전거가 갑의 소유가 아님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즉시 을의 것이 된다.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예외가 필요하다.

그런데 거래의 목적물인 동산이 도품인 경우에는 도품의 성질 때문에, 거래 시에 그 물건이 매도인의 것이라고 매수인이 믿고 유효한 거래에 의하여 넘겨받았다 하더라도 무권리자(소유권이 없는 자)로부터 그 물건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즉 위의 예에서 자전거가 병으로부터 절취된 경우라면 거래의 안전보다는 진정한 소유자로서의 병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갑이 을에게 병의 자전거를 매도하고 넘겨주었다 해도 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병의 것으로 남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반면, 돈을 물건이라는 측면과 가치(비물건)라는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다. 돈을 물건으로 보면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돈을 가치로 본다면 돈은 물건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되며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 보기 | —

- ㄱ. 도품 아닌 시계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넘겨주었는데, 을은 그 시계가 갑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을이 다시 정에게 그 시계를 매도하고 넘겨주었는데, 이 때 정은 을이 시계의 소유자라고 믿었다. 정은 시계에 대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 ㄴ. 돈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도품인 돈을 넘겨주었는데, 을은 그 돈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갑의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을의 것이 되지 못한다.
- ㄷ. 돈을 가치로 보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돈을 주었는데, 을은 갑이 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을의 소유가 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예제 3 해설

#### 기초 법률용어

절취(절도): 훔침

#### 지문 구조화

원칙: 권리 가진자 → 권리 이전

- └ 예외: 동산&매수인의 선의&유효한 거래 → 권리 취득 (for 거래 안전 보호)
- └ 예외의 예외: **도품**&동산&매수인의 선의&유효한 거래 → 권리 취득

돈: ┌ 물건으로 보면,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  
└ 비물건(가치)로 보면, 갖고 있는 사람 것

#### 선지 판단(정답 ㉔)

- ㄱ. **도품** 아닌 시계를 갑이 을에게 **매도**하고 넘겨주었는데, 을은 그 **시계가 갑의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다**. 을이 다시 정에게 그 시계를 **매도**하고 넘겨주었는데, 이 때 정은 을이 **시계의 소유자라고 믿었다**. 정은 시계에 대하여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한다.  
: 을과 정을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을은 **선의**가 아니라 **악의**죠? 이는 예외의 앞부분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을은 시계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즉, 을은 무권리자입니다. 반면 정은 **선의**였고, 예외의 앞부분을 만족하므로, (을이 무권리자임에도) 유효하게 권리를 취득합니다.
- ㄴ. **돈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도품인 돈을 넘겨주었는데, 을은 그 돈이 도품이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갑의 것이라고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은 을의 것이 되지 못한다.  
: 돈을 물건으로 보는 경우, 동산과 동일하게 취급해야 합니다. 제시된 상황(돈 = 도품)은 예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을은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 ㄷ. **돈을 가치로 보는 경우**, 갑이 **을에게 돈을 주었는데**, 을은 갑이 그 돈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돈은 **을의 소유**가 된다.  
: 돈을 가치(비물건)로 보는 경우, 훔쳤든 말았든, 그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가진 사람 을이 소유자입니다.

※ 이 문항과 굉장히 유사한 문항이 2009학년도 LEET 추리논증에도 출제된 적 있습니다.

**예제 4**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이라 하고,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동산이라 한다. 계약(예: 매매, 증여 등)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예: 매수인,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반면에 상속·공용징수(강제수용)·판결·경매나 그 밖의 법률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다만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다. 한편 계약에 의하여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도인(예: 매도인, 증여자)이 양수인에게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한다.

- ① A가 자신의 부동산 X를 B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한 경우, B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A의 부동산 X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B가 그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고 인도하면, C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③ A가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동산 X를 B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A가 B에게 동산 X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B는 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④ A의 상속인으로 B와 C가 있는 경우, B와 C가 상속으로 A의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B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⑤ A와의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B가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B 명의로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B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예제 4 해설**

**기초 법률용어**

등기: 법적 절차에 따라 일정한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

계약, 매매, 증여 (2019학년도 수능 출제!!!)

**계약**도 하나의 약속이다. 하지만 이것은 친구와 뜻이 맞아 주말에 영화 보러 가자는 약속과는 다르다. 일반적인 다른 약속처럼 계약도 서로의 의사표시가 합치하여 성립하지만, 이때의 의사는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한 예로 **매매 계약**은 ‘팔겠다’는 일방의 의사 표시와 ‘사겠다’는 상대방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짐과 동시에 매매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반대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소유권의 이전을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양 당사자는 서로 권리를 행사하고 서로 의무를 이행하는 관계에 놓이는 것이다.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에게 줄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수증자 = 증여 받는 사람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증여자만 이행 의무를 진다는 점이 특징이다.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유언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유효하게 성립하고 의사 표시의 상대방이 필요 없다는 점에서 증여와 차이가 있다.

공용징수(= 강제수용): 공익사업을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손실에 대해 보상해주긴 함)

## 지문 구조화

- 부동산: { 계약(≒매매, 증여): 양수인 명의로 등기 → 소유권 이전  
          { 나머지: 소유권 이전 (등기 불필요). but ~등기 → ~처
- 동산: 인도 → 소유권 이전

## 선지 판단(정답 ⑤)

- ① A가 자신의 **부동산 X**를 B에게 1억 원에 팔기로 한 경우, B가 A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때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② A의 부동산 X를 **경매**를 통해 취득한 B가 그 **부동산**을 C에게 **증여**하고 인도하면, C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 부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부동산 계약(≒증여)시 C명의로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 ③ A가 점유하고 있는 자신의 동산 X를 B에게 증여하기로 한 경우, A가 B에게 동산 X를 인도하지 않더라도 B는 동산 X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 제시문에 따르면 동산은 인도해야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④ A의 상속인으로 B와 C가 있는 경우, B와 C가 상속으로 A의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B와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  
: 상속은 소유권이전등기 필요 없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 ⑤ A와의 부동산 X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라 B가 A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더라도 B 명의로 부동산 X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 B는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 **~등기 → ~소유권 이전**은 “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양수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한다”와 같은 맥락이므로 적절합니다.

1~4번은 PSAT/LEET 빈출테마 중 일부를 선별한 것입니다.

이제 2020학년도 9월 모의평가 법학 지문을 보면서

얼마나 유사한지 직접 느껴보세요!

**예제 5~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물건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의 주인일까? 점유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를 뜻한다. 이에 비해 소유란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라고 정의된다. 따라서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다.

[A]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고 있는 것을 포함하여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직접점유라고 한다. 이에 비해 어떤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도 사실상의 지배를 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를 간접점유라고 한다. 직접점유와 간접점유는 모두 점유에 해당한다. 점유는 소유자를 공시하는 기능도 수행한다. 공시란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이다. 물건 중에서 피아노, 금반지, 가방 등과 같은 대부분의 동산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된다.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되려면, 소유자가 양도인이 되어 양수인과 유효한 양도 계약을 하고 이에 더하여 소유권 양도를 공시해야 한다. ㉠ 점유로 소유권이 공시되는 동산의 소유권 양도는 점유를 넘겨주는 점유 인도로 공시된다. 양수인이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서 ‘점유개정’과 ‘반환청구권 양도’가 있다. 예를 들어 A가 B에게 피아노의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계약하되 사흘간 빌려 쓰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 B는 A에게 피아노를 사흘 후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양도인이 직접점유를 유지하지만, 양수인에게 점유 인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한다. 한편 C가 자신이 소유한 가방을 D에게 맡겨 두어 이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 가방의 소유권을 E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자. 이때 C가 D에게 통지하여 가방 주인이 바뀌었으니 가방을 E에게 반환하라고 알려 주면 D가 보관 중인 가방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C로부터 E에게로 넘어간다. 이 경우를 반환청구권 양도라고 한다.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양수인이 점유 인도를 받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을까? 점유로 공시되는 동산의 경우 양수인이 충분히 주의를 했는데도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님을 알지 못한 채 양도인과 유효한 계약을 하고, 점유 인도로 공시를 했다면 양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것을 ‘선의취득’이라 한다. 다만 간접점유에 의한 인도 방법 중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을 하지 못한다. 선의취득으로 양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면 원래 소유자는 원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다.

반면에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등록으로 공시되어야 하는 물건은 아예 선의취득 대상이 아니다. ㉡ 법률이 등록 대상으로 규정한 자동차, 항공기 등의 동산은 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이고, ㉢ 토지·건물과 같은 부동산은 등기로 공시되는 물건이다. 이러한 고가의 재산에 대해 선의취득을 허용하게 되면 원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소유권 박탈이 ㉣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거래 안전에만 치중하고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를 경시한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예제 5**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예제 6** [A]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예제 7**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예제 8**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기 | —

갑과 을은, 갑이 끼고 있었던 금반지의 소유권을 을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유효한 계약을 했다. 갑과 을은, 갑이 이 금반지를 보관하다가 을이 요구할 때 넘겨주기로 합의했다. 을은 소유권 양도 계약을 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 을은 일주일 후 병과 유효한 소유권 양도 계약을 했고, 갑에게 통지하여 사흘 후 병에게 금반지를 넘겨주라고 알려 주었다.

- ①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병이 금반지의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② 갑이 금반지 소유자였다면, 을은 갑으로부터 물리적 지배를 넘겨받지 않았으나 점유 인도를 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은 을로부터 을이 가진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④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을은 반환청구권 양도로 병에게 점유 인도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⑤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더라도, 병이 계약할 때 양도인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양도인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예제 9** 문맥상 의미가 @와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작년은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건이 일어난 해였다.
- ② 청중 사이에서는 기쁨으로 인해 환호성이 일어났다.
- ③ 형님의 강한 의지력으로 집안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 ④ 나는 그 사람에 대해 경계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었다.
- ⑤ 사회는 구성원들이 부조리에 맞서 일어남으로써 발전한다.

## 예제 5~9 해설

### 기초 법률용어 & 지문 구조화

점유: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

소유: 어떤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상태

└ 점유자 ≠ 소유자일 수 있음

└ 직접점유: (물건을 빌려 쓰거나 보관하는 것을 포함) 물건을 물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

└ 간접점유: 반환청구권을 가진 상태

대부분의 등산: 점유 → 소유자 공시

└ 물건을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 주는 것

소유자 = 양도인 & 유효한 양도 계약 & 소유권 양도 공시 → 물건 소유권 양도

└ ㉠ 점유(등산): 점유 인도 (원칙)

└ 예외: 간접점유

└ 점유개정: 양도인이 직접점유, 반환권 발생

└ 반환권 양도: 제3자가 직접점유, 반환권 양도

└ ㉡ 등록(등산): 자동차, 항공기 등

└ ㉢ 등기(부동산): 토지, 건물

선의취득: 충분한 주의&선의&유효한 계약&점유인도로 공시(㉠) → 소유권 취득 for 거래안전

└ 예외 1: 점유개정으로는 선의취득 불가

└ 예외 2: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물건(㉡, ㉢) for 소유자 권리보호

## 예제 5 해설

(정답 ⑤)

① 가방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그 가방의 **점유**자이다.

: 사용하고 있는 것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 상태로 볼 수 있으니, 점유자라는 판단은 적절합니다.

② 가방을 **점유**하고 있더라도 그 가방의 **소유**자가 아닐 수 있다.

: 점유자와 소유자가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가방을 훔치거나 빌려서 사용하는 중이라면 소유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③ 가방의 **소유권**이 **유효한 계약**으로 이전되려면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한다.

: “소유자 = 양도인&유효한 양도 계약&소유권 양도 공시 → 물건 **소유권 양도**”였습니다. 가방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이므로 점유 인도가 있어야 합니다.

④ 가방에 대해 누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게 해 주는 방법은 점유이다.

: ③에서 봤듯, 가방은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⑤ 가방의 소유권을 양도하는 유효한 계약을 체결하면 공시 방법이 갖춰지지 않아도 소유권은 이전된다.

: “소유자 = 양도인&유효한 양도 계약&**소유권 양도 공시** → 물건 소유권 양도”이므로 공시가 있어야 합니다.

## 예제 6

(정답 ⑤)

- ① **물리적 지배**를 해야 동산의 **간접점유자**가 될 수 있다.  
: 간접점유자는 물리적 지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② **간접점유**는 피아노 소유권에 대한 **공시 방법**이 아니다.  
: “간접점유를 하여 소유권 이전이 공시되는 경우”로 점유개정, 반청권 양도가 제시됐죠.
- ③ 하나의 동산에 **직접점유자**가 있으려면 **간접점유자**도 있어야 한다.  
: **직접점유자 = 소유자**일 경우 간접점유자는 필요 없습니다.
- ④ 피아노의 **직접점유자**가 있으면 그 피아노의 **간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다.  
: 거꾸로입니다. 반환청구권을 가진 간접점유자가 있으면, 직접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닙니다.
- ⑤ **유효한 양도 계약**으로 피아노의 **소유자**가 되려면 피아노에 대해 **직접점유**나 **간접점유** 중 하나를 갖춰야 한다.  
: 피아노는 **점유**에 의해 소유권이 공시되는 물건으로 볼 수 있고, 이때 소유자는 직접점유를 하거나 ②에서 봤듯, 간접점유를 해야 합니다.

## 예제 7 해설

(정답 ②)

- ① ㉠은 ㉡과 달리,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공적 기록에 의해 소유권 양도가 공시되는 것은 ㉠이 아니라 ㉡, ㉢입니다.
- ② ㉡은 ㉠과 달리, 원래 소유자의 **권리 보호**가 **거래 안전**보다 중시되는 대상이다.  
: 선의취득에 대한 마지막 문단 설명에서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 ③ ㉢은 ㉠과 달리, 물리적 지배의 대상이 아니므로 점유로 공시될 수 없다.  
: ㉢이 점유로 공시될 수 없긴 하나, 토지, 건물 역시 물리적 지배의 대상입니다.
- ④ ㉠과 ㉢은 모두 양도인이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 ㉠은 선의취득으로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나, ㉡은 선의취득의 예외입니다.
- ⑤ ㉠과 ㉢은 모두 점유개정으로 소유권 양도가 공시될 수 있다.  
: ㉢은 직접/간접 점유가 아니라 등기·등록으로 공시될 수 있습니다.

## 예제 8 해설

(정답 ③)

<보기>에서 갑이 소유자인지 무권리자인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선지를 통해 경우의 수를 따져보라고, 출제자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죠. (예제 3으로 다뤘던 **2016학년도 LEET 추리논증 7번**과 동일한 구조입니다.)



갑이 소유자라면, 을은 갑으로부터 점유개정으로 소유권을 양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병은 을로부터 반청권 양도로 소유권을 양도 받았고요. 따라서 ①, ②는 적절합니다.

반면 갑이 소유자가 아니라면, 을은 소유권을 양도 받지 못했습니다. 점유개정으로선 선의취득이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병이 계약할 때 을이 소유자라고 믿었고 을이 소유자인지 확인하기 위해 충분히 주의했다면, 즉 **선의, ~과실**이라면, 을이 무권리자임에도 선의취득을 통해 병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점유개정이 아니라 반청권 양도를 거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④, ⑤는 적절합니다.

③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라도, 병은 을로부터 **올아카잔** 소유권을 양도받아 취득한다.

: 갑이 금반지 소유자가 아니었다면, 을은 애초에 소유권을 갖지 않습니다.

## 예제 9 해설

(정답 ①)

㉠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는 뜻이죠? ①에 대입했을 때 가장 적절합니다.

어떤가요? 앞의 예제1~4를 꼼꼼하게 풀어봤다면, 2020학년도 모의평가 지문은 굉장히 익숙하게 풀 수 있었겠죠? 특히 이 시험 최고난도 문항으로 꼽히는 8번 문항은 예제3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LEET 출제자가 모의평가 출제자로 들어가서 그랬을 수도 있고, 법학에서 이 사례를 중요하게 다루어서 우연히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PSAT/LEET 기출문제를 충분히 풀어두면 수능 시험장에서 도움 받을 수 있을 겁니다. :)

이 책이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다면,

이제 61문항을 신나게 풀어보겠습니다!

※ 각 문항당 풀이시간은 3분을 넘지 않도록 긴장하며 푸세요.

실제 이 시험을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2분 내에 푸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덧: 혹 이 교재로 강의/과외하실 분들은 사전에  
[artofkorean@gmail.com](mailto:artofkorean@gmail.com)으로 연락하여 합의해주세요.

## 2. 극한지문 법학 61제

[ 출처: 2011학년도 LEET 추리논증 7번 ]

- 1 조직폭력단의 일원으로 알려진 갑이 소년 K를 차에 태우고 간 것이 목격되었고 이후 K가 실종되었다. K를 납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갑은 친구 을을 변호사로 선임하였다. <규정>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규정>

#### 제3조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이하 ‘변호사’)는 의뢰인이 법적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알려준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임박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4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

비밀유지 대상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직무상 나눈 비밀 대화 및 문서를 포함한다.

#### 제5조 【비밀유지의 기간】

비밀유지의무는 의뢰인이 포기하지 않는 한 ‘변호사-의뢰인 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지속된다.

### — | 보기 | —

- ㄱ. 갑이 납치사실을 인정하고 비밀을 지켜 달라고 부탁하면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ㄴ. 갑의 소송 진행 중, 갑의 사무실을 청소하던 직원이 갑 몰래 을에게만 갑이 살해한 K의 소재를 알려주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줄 수 있다.
- ㄷ. 갑의 소송 진행 중, 갑과 을이 친구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자신이 K를 납치했다고 갑이 공개적으로 실토했다 하여 을이 K의 소재를 알게 되었다면, 을은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 ㄹ. 갑으로부터 K를 잔혹하게 살해하였다는 것을 듣게 된 을이 변호사의 양심상 더 이상 갑의 변호사가 될 수 없어 사임하였더라도, 을은 K의 소재를 경찰에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ㄷ, ㄹ

④ ㄱ, ㄴ, ㄷ

⑤ ㄱ, ㄷ, ㄹ

2 X국의 다음 <규정>과 <사실관계>에 근거한 판단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규정>**  
(가) 누구든지 자기의 현재 배우자가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나) 누구든지 결혼 기간 중 배우자로부터 들은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고, 그 내용을 말한 자도 자신이 피고인인 형사재판에서 상대방이 그 내용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다.

**<사실관계>**  
A는 여자친구 B에게 자신이 마약조직의 두목이라는 사실을 은밀히 고백하였다. A의 부하는 A가 고백한 사실을 알게 된 후, B를 죽여서 나중에 A가 마약범죄로 기소될 경우에 증언할 가능성을 막아야 한다고 A에게 조언했다. A는 B와 결혼하면 B가 남편인 자기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후 B와 결혼하였다. 그 후 A는 마약범죄로 기소되었고 검사는 B를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 | 보기 | —

ㄱ. (가)에 규정된 권리는 B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  
ㄴ. (가)에 규정된 권리는 A와 B가 이혼하면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ㄷ. (나)의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고백 당시 B가 A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B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ㄹ. (나)의 ‘증언을 금지시킬 수 있는 권리’는 고백 당시 A가 B의 배우자가 아니므로 A가 주장할 수 없는 권리이다.

- ① ㄱ, ㄴ
- ② ㄷ, ㄹ
- ③ ㄱ, ㄴ, ㄷ
- ④ ㄴ, ㄷ, ㄹ
- ⑤ ㄱ, ㄴ, ㄷ, ㄹ

[ 출처: 2014학년도 LEET 추리논증 3번 ]

3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원칙>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자는 그 권리의 발생에 필요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권리가 발생하였으나 사후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이러한 권리 발생의 주장이나 그 사후 소멸에 관한 주장에 관한 다툼이 없으면 권리의 발생이나 그 소멸을 주장하는 자는 그 주장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 | 보기 | —

- ㄱ.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돈이 생기면 갚겠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 ㄴ.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빌렸지만 그 후에 갚았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으로부터 빌린 돈을 을이 갚았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을에게 있다.
- ㄷ.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당신으로부터 100만원을 빌린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 ㄹ. 갑이 을에게 “당신이 빌려 간 100만원을 돌려 달라.”라고 주장하였다. 을은 “100만원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당신이 빌려 준 게 아니라 그냥 준 것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이 경우에 갑이 을에게 100만원을 빌려 주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갑에게 없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글에 근거할 때 옳지 않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검사와 피고인은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

항소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항소는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한다. 원심법원은 항소의 제기가 법률의 방식에 위반하거나 항소권이 소멸된 후인 것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기각결정을 하는 경우 이외에는 항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소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항소법원이 기록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항소법원의 소송기록의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항소이유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하고, 상대방은 그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답변서의 제출을 받은 항소법원은 지체없이 그 부분이나 등본을 항소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 항소란 1심판결에 대한 2심에의 불복을, 상고란 2심판결에 대한 3심에의 불복을 말한다. 그리고 원심법원이란 항소나 상고의 대상이 되는 판결을 선고한 법원을 말한다.
- ※ 위의 항소절차에 관한 설명은 상고절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 항소(상고)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을 산입하지 않는다.

— | 보기 | —

ㄱ. 만약 2013년 1월 8일 A법원에서 1심판결을 선고받았다면 2013년 1월 14일까지 A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ㄴ. 만약 2013년 1월 8일 A법원에서 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2013년 1월 15일에 피고인이 항소하였다면 A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ㄷ. 만약 2013년 1월 14일 피고인이 A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 한 A법원은 2013년 1월 28일까지 A법원의 항소법원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한다.

ㄹ. 만약 피고인이 2013년 2월 4일 항소법원으로부터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받았다면 피고인은 2013년 2월 14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ㅁ. 2013년 3월 4일 피고인(미성년자)에 대하여 항소심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피고인의 누나가 피고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3년 3월 11일 상고심에 상고장을 제출하였다면 그 상고는 적법·유효하다.

- |           |           |           |
|-----------|-----------|-----------|
| ① ㄱ, ㄴ, ㄷ | ② ㄱ, ㄴ, ㅁ | ③ ㄱ, ㄷ, ㄹ |
| ④ ㄴ, ㄷ, ㄹ | ⑤ ㄷ, ㄹ, ㅁ |           |

5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민사소송에서 판결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되며, 확정된 판결에 대해서 당사자는 더 이상 상급심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첫째,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그리고 하급심 판결이라도 선고 전에 당사자들이 상소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이 합의를 법원에 제출할 경우, 판결은 선고 시에 확정된다.

둘째, 상소기간이 만료된 때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가 있다. 상소는 패소한 당사자가 제기하는 것으로, 상소를 하고자 하는 자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상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상소할 수 없게 되므로, 판결은 상소기간 만료 시에 확정된다. 또한 상소기간 내에 상소를 제기하였더라도 그 후 상소를 취하하면 상소기간 만료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셋째, 상소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패소한 당사자가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제출 시에 판결은 확정된다.

— | 보기 | —

원고 A는 피고 B를 상대로 ○○ 지방법원에 매매대금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 지방법원은 A에게 매매대금지급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6년 11월 1일 원고 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문은 A에게는 2016년 11월 10일 송달되었고, B에게는 2016년 11월 14일 송달되었다.

- ① B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할 수 있다.
- ② A가 2016년 11월 28일까지 상소하지 않으면, 같은 날 판결은 확정된다.
- ③ A가 2016년 11월 11일 상소한 후 2016년 12월 1일 상소를 취하하였다면, 취하한 때 판결은 확정된다.
- ④ A와 B가 상소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2016년 10월 25일 법원에 제출하였다면,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다.
- ⑤ A가 2016년 11월 21일 법원에 상소포기서를 제출하면, 판결은 2016년 11월 1일 확정된 것으로 본다.

6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A가 납부하는 송달료의 합계는?

송달이란 소송의 당사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소송상의 서류의 내용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법에 정한 방식에 따라 하는 통지행위를 말하며, 송달에 드는 비용을 송달료라고 한다.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소장이나 상소장을 제출할 때 당사자 수에 따른 계산방식으로 산출된 송달료를 수납은행(대부분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그 은행으로부터 교부받은 송달료납부서를 소장이나 상소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송달료 납부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 소 또는 상소 제기 시 납부해야 할 송달료
  - 가. 민사 제1심 소액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10회분
  - 나. 민사 제1심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15회분
  - 다. 민사 항소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12회분
  - 라. 민사 상고사건: 당사자 수×송달료 8회분
- 송달료 1회분: 3,200원
- 당사자: 원고, 피고
- 사건의 구별
  - 가. 소액사건: 소가 2,000만 원 이하의 사건
  - 나. 소액사건 이외의 사건: 소가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건

※ 소가(訴價): 원고가 승소하면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을 화폐단위로 평가한 금액

— | 보기 | —

A는 보행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B의 상품진열대에 부딪쳐서 부상을 당하였고, 이 상황을 C가 목격하였다. A는 B에게 자신의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다. 그러나 B는 A의 잘못으로 부상당한 것으로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으며, 오히려 A 때문에 진열대가 파손되어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A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는 자신을 원고로, B를 피고로 하여 병원치료비와 위자료로 합계 금 2,000만 원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증인 C의 증언을 바탕으로 A에게 책임이 있다는 B의 주장이 옳다고 인정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대해서 A는 항소를 제기하였다.

- ① 76,800원
- ② 104,800원
- ③ 124,800원
- ④ 140,800원
- ⑤ 172,800원

7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 소취하: 소송진행 중 원고는 자신이 제기한 소(訴)를 취하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소송에서 변론을 하였을 때에는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소취하를 하면 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원고는 판결이 선고되었어도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언제든지 소취하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1심 소송진행 중에 소취하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항소심 소송진행 중에도 소취하를 할 수 있다. 원고가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1심의 소를 제기한 때로 소급하여 소송이 소멸된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이 종료될 뿐만 아니라 1심 소송결과 자체를 소멸시키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도 그 효력을 상실한다. 그 결과 소송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은 해결되지 아니한 채 소송만 종료된다.
- 항소취하: 1심 판결에 패소한 당사자는 항소(抗訴)를 제기할 수 있는데, 그 자를 '항소인'이라고 하고 항소의 상대방 당사자를 '피항소인'이라고 한다. 항소인은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만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피항소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항소취하를 하면 항소가 제기된 때로 소급하여 항소가 소멸되고 항소심은 종료된다. 항소취하는 항소 제기시점으로 소급하여 항소만 소멸되기 때문에, 항소의 대상이 되었던 1심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며 그 판결 내용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해결된다.

— 보기 —

A는 B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는데도 B가 갚지 않고 있다. 그래서 A가 원고가 되어 B를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1심 법원은 A의 주장을 인정하여 A의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B가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 ①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는 B는 항소취하를 할 수 없다.
- ②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A는 B의 동의 없이 항소취하를 할 수 있다.
- ③ 항소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 B는 A의 동의를 얻어야 소취하를 할 수 있다.
- ④ 항소취하가 유효하면 항소심이 종료되고, A의 B에 대한 1심 승소판결의 효력은 소멸된다.
- ⑤ 소취하가 항소심에서 유효하게 이루어진 경우, A와 B 사이의 대여금에 관한 분쟁에서 A가 승소한 것으로 분쟁이 해결된다.



8 다음 글과 <상황>을 근거로 판단할 때 옳은 것은?

불법 주·정차 등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관할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관할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처분의 통지를 받은 사람(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그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관할행정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은 효력을 상실한다. 관할행정청이 당사자의 이의제기 사실을 관할법원에 통보하면, 그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재판을 개시한다. 과태료 재판을 담당하는 관할법원은 당사자의 주소지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이다.

법원은 정식재판절차 또는 약식재판절차 중 어느 하나의 절차를 선택하여 과태료 재판을 진행한다. 정식재판절차로 진행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에 과태료 재판을 한다. 약식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 진술을 듣지 않고 검사 의견만을 구하여 재판을 한다.

정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그 재판의 결과(이하 '결정문'이라 한다)를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약식절차에 의한 과태료 재판에 불복하고자 하는 당사자 또는 검사는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과태료 재판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며, 그 재판에 대해 당사자 또는 검사는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 보기 |—

청주시에 주소를 둔 A는 자기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에 놀러갔다. 며칠 후 관할행정청(이하 'B'이라 한다)은 불법 주차를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지를 A에게 하였다. 이 과태료 부과에 대해 A는 B에게 이의를 제기하였고, B는 A의 주소지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하였다.

- ① A는 B에게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직접 청주지방법원에 과태료 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A가 B에게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과태료 처분은 유효하기 때문에 검사의 명령에 의해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
- ③ 청주지방법원이 정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B가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상급심 법원에 즉시항고하여야 한다.
- ④ 청주지방법원이 A의 진술을 듣고 검사 의견을 구한 다음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검사가 이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⑤ 청주지방법원이 약식재판절차에 의해 과태료 재판을 한 경우, A가 그 재판에 불복하려면 결정문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일 내에 청주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10 을의 입장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하거나 위협할 때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러한 불안이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실효적인 경우에만 인정되고, 다른 소송방법에 의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예컨대, 특정한 의무의 이행을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 단지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을 하는 것은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방법이 아니어서 소송을 할 이익이 없다. 행정소송에서의 무효확인소송도 확인소송의 성질을 가지므로, 민사소송에서처럼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된다.

을: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 유무 등을 확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대등한 주체 사이의 사법상(私法上)생활관계에 관한 분쟁을 심판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는 목적, 취지 및 기능 등을 달리한다. 또한 행정소송법은 무효확인소송의 판결의 효력에 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특수한 효력을 추가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권리구제방법으로서 효과적인 다른 소송수단이 있다 하더라도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 보기 | —

- ㄱ. 을은 민사소송에서의 확인소송은 보충성의 원칙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 ㄴ. 을은 행정소송에서의 무효확인소송의 성질이 확인소송임을 부인하고 있다.
- ㄷ. 을은 확인소송의 보충성의 원칙을 민사소송에만 한정하고자 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 12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청이 허가를 내린 후에 허가의 효력을 상실시키기 위해서 그 허가를 취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허가 취소는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유형 A는 허가를 내릴 당시에는 허가를 받을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어 허가가 내려졌는데 그 후에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거나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둬들여야 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하여 행정청이 장래를 향해 허가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허가가 발령 당시에는 정당하게 내려진 허가이므로 행정청은 함부로 이 유형의 허가 취소를 할 수 없고, 법에 이러한 사정이 개별적으로 허가 취소의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허가를 받은 자에게 책임이 있어서 내려지는 유형 A의 허가 취소는 제재적 의미를 갖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자가 이미 받은 허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지만, 공익을 위해 허가를 거둬들여야 하는 새로운 사정이 발생해서 내려지는 유형 A의 허가 취소에 대해서는 허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유형 B는 애초에 허가를 받을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음에도 허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내려진 것에 대하여 행정청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허가의 효력을 소급해서 소멸시키는 것이다. 유형 B의 허가 취소는 법에 이를 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이뤄질 수 있다. 또한 이 유형의 허가 취소는 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가 위법 또는 부당하게 내려진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 ①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의 정당한 약관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유형 A에 해당한다.
- ② 허가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것처럼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는 유형 B에 해당한다.
- ③ 허가가 내려진 이후 해당 사업을 폐지하기로 행정정책이 바뀌어 행정청이 그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해 달라고 주장할 수 있다.
- ④ 허가에 필요한 동의서의 수가 부족하였으나 이를 간과하고 허가가 내려진 것이 발견되어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법에 이 사유가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없다.
- ⑤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이 지나도록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있어 이를 이유로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하는 경우, 법에 이 사유가 허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어야 행정청이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14 다음 글로부터 추론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우리 헌법은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소극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타인의 침해로부터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가 소극적 방어권으로서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으며 침해 범위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그러나 국가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하는 경우에는 설사 그 보호의 정도가 국민이 바라는 이상적인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헌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국가가 기본권 보호의무를 어떻게, 어느 정도로 이행할지는 국가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인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재량의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재량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소위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적용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한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하여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기본권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 | 보기 | —

- ㄱ. 건축 공사장의 먼지로 주변 주민들의 주거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된다. 그런데 국가가 건축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아무 규제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주거권 보호의무 위반이다.
- ㄴ. 농어촌 지역에 약국이 부족해서 주민들의 건강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된다. 이에 주민 수와 상관 없이 일정한 면적마다 약국을 설치하는 것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조치로 평가되는데, 제시된 면적보다 10배 이상 넓은 면적 단위마다 약국을 설치하도록 국가가 조치했다면 이는 건강권 보호의무 위반이다.
- ㄷ. 확산장치 사용에 의한 소음으로 환경권이라는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인정된다. 이에 확산장치의 ‘전면적 사용 금지’, ‘특정 시간대별 사용제한’, ‘사용 대수 제한’ 등이 적절하고 효율적인 조치로 평가받고 있는데 국가가 그 중 효율성이 중간 정도라 평가받는 ‘사용 대수 제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는 환경권 보호의무 위반이다.

- ① ㄴ
- ② ㄷ
- ③ ㄱ, ㄴ
- ④ ㄱ, ㄷ
- ⑤ ㄱ, ㄴ, ㄷ